

■ 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2] <개정 2023. 6. 5.>

국가보훈등록증(제6조제1항 관련)

1. 국가보훈등록증

(앞면)

 국가보훈등록증

(국가보훈대상자 구분)

사 진

3.5cm×4.5cm

(모자 벗은 상반신으로
배경 없이 6개월 내에
촬영한 컬러사진)

(성명)

(주민등록번호)

(대상 구분)

보훈번호:

(주소)

(경합 등록사항)

 (발행연월일)

국가보훈부장관 직인

(뒷면)

 국가보훈부

▶ 이 증으로 무료 또는 감면 이용할 수 있는 국공립 시설물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• 무료: 고궁·능원, 국공립 공원, 독립기념관, 전쟁기념관,
국공립 박물관·미술관, 국공립 수목원, 국공립 자연휴양림

QR

• 감면: 국공립 공연장(대관 공연은 제외), 국공립 공공체육시설

세부내용
QR 참조

※ 증을 분실했거나 신상이 변동된 분은 관할 보훈(지)청에 신고해 주십시오.

※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.

※ 보훈상담센터 : ☎ 1577-0606

86mm×54mm[폴리염화비닐(PVC) 980.4g/m²]

2.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

 국가보훈등록증		(국가보훈대상자 구분)	
사 진 3.5cm×4.5cm (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배경 없이 6개월 내에 촬영한 컬러사진)	(성명)	(주민등록번호)	(대상 구분)
	보훈번호:		
	(주소)		
	(경합 등록사항)		
	 (발행연월일)		
	국가보훈부장관 직인		

3. 국가보훈등록증 기재사항 작성방법 등

가. 대상 구분란에는 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적용 대상 5·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선순위 유족과 「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5항에 따른 장해등급(법 제4조제2호에 따른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만 해당한다)을 기재한다.

나. 다음 사항을 추가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경합 등록사항란에 기재한다.

- 1) 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적용 대상 중 대상 구분란에 기재되어 있는 적용 대상 외의 다른 적용 대상 5·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선순위 유족
- 2)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나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
- 3)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선순위 유족
- 4)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)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·공무원 또는 그 선순위 유족
- 5)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선순위 유족
- 6)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중기복무 제대군인
- 7)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조 각 호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선순위 유족

다. 앞면과 뒷면에 색변환 잉크, 미세선 문양 등 위조방지용 디자인 및 비표를 넣는다(제1호의 국가보훈등록증만 해당한다).

라.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집적회로 칩을 넣는다(제1호의 국가보훈등록증만 해당한다).